

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신복순

충청북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오영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4년 11월 15일
- 회부일자 : 2024년 11월 15일

3. 제안이유

- 지방행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인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이 2020년 3월 31일 시행됨에 따라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 시·군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공무원들이 행정동우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동우회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함(안 제3조).
- 동우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하고, 정회원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 시·군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무원으로 하고, 명예회원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 시·군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 등으로 정함(안 제4조).

- 동우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,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,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,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(안 제6조).
- 동우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 충당하고,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,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 이에 관한 서류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(안 제7조 및 제8조).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에 있는 시·군에서 근무 후 퇴직한 행정공무원이 지방행정동우회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안 제3조에서 동우회의 설립 목적, 명칭, 소재지, 사업에 관한 사항, 회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,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, 집행기관과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 등 정관 필수 규정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, 안 제4조에서는 회원에 대해 “정회원”과 “명예회원”으로 구분하고 정회원과 명예회원의 자격 요건을 구분하는 규정을 두었음.
- 안 제6조에서는 동우회의 사업에 대해 “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”, “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”, “충청북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” 등 6가지로 사업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, 안 제7조에서는 동우회 운영을 위한 재정에 대해 회원의 회비와 정관 또는 회칙으로 정하는 수입으로

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며, 필요에 따라 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시하였음.

- 안 제8조에서는 동우회의 재정과 감독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, 보조금 지급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 및 보조금 사용에 대한 서류 제출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현재, 퇴역 군인과 퇴직 경찰공무원, 퇴직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(1961년 5월 10일 제정), 「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」(1973년 12월 31일 제정), 「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법」(2012년 3월 21일 제정) 등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오래전부터 지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.
- 반면, 지방행정동우회의 경우 「지방행정동우회법」이 2020년 3월 31일 제정되면서 상위법령에 근거하는 지원 조례 제정이 미비한 상태임.
 - 8개 시·도 (강원특별자치도, 경기도, 대전광역시, 제주특별자치도, 인천광역시, 전라남도, 전북특별자치도, 충청남도)만이 지방행정동우회 관련 조례가 존재할 뿐, 충청북도를 포함한 9개 시도에서는 여전히 지방행정동우회 관련 지원 조례가 부재함.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 시·군에서 퇴직한 지방행정공무원이 공무원 생활을 통해 획득한 행정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